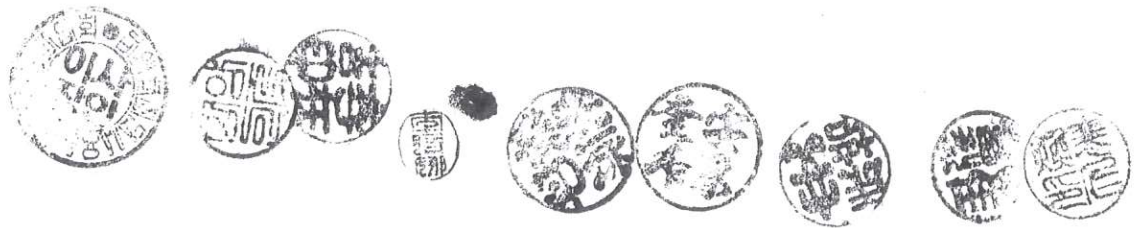


기령 38호

정 관



(재단법인) 나요당 농요상 기념사업회



정 관

재단법인 나요당 농요상 기념사업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요당 농요상(羅謠堂 農謠賞) 기념사업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내에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전래 농요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여 자손만대에 이를 전승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단법인의 주된 목적은 <나요당 농요상>을 수여하는 장학사업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3년마다 1회 나요당 농요상 시상
2. 각 시군의 신생 농요단 초청 공연
3. <농요기념비 공원> 조성
4. 기타 전래되어 온 노래 보급에 관련된 업무 일체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② 본회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약간 명의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예천 통명 농요보존회의 회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
- ② 감사는 예천 통명농요 보존회 회원 중에서 1인, 예천 공처 농요보존회 회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9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선임 시 임기를 조정할

-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결원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카톡의 나요당재단 임원 대화방으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 산 과 회 계

제20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3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棄替)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결산)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7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과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부 서

제3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3. 7.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임 기 |
|-----|-------|-----------|--|--------------------------|
| 이사장 | 이 소 라 | 1944.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10, 204동 1703호(계산동 오뚜그란데 미학) | 2023.10.1.~ 2026.9.30 |
| 이 사 | 안 승 규 | 1949.9.19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3-5 | 상 동 |
| “ | 안 성 배 | 1973.7.18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4-5 | 상 동 |
| “ | 최 부 열 | 1950.6.3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1길 30-11 | 상 동 |
| “ | 배 인 환 | 1940.1.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1126(만년동 골드타워) | 상 동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직 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명 |
|-----|-------|-----------|--|----|
| 이사장 | 이 소 라 | 1944.2.6 | 대전 유성구 학하남로10, 204-1703 (계산동 오뚜그란데 미학) | |
| 이 사 | 안 승 규 | 1949.9.19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3-5 | |
| “ | 안 성 배 | 1973.7.18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4-5 | |
| “ | 최 부 열 | 1950.6.3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1길 30-11 | |
| “ | 배 인 환 | 1940.1.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1126(만년동 골드타워) | |

부 칙 <일부개정, 2026.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기명날인) 본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직 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날인 |
|-----|-------|------------|--------------------------------------|-------------------|---|
| 이사장 | 이 소 라 | 1944.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10 미학Apt. 204-1703 | 010- 6320-2309 |  |
| 이 사 | 안 승 규 | 1949.9.19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3-5 | 010- 3359-1627 |  |
| “ | 안 성 배 | 1973.7.18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44-5 | 010- 9759-0852 |  |
| “ | 최 부 열 | 1950.6.3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1길 30-11 | 010- 4266-4572 |  |
| “ | 배 인 환 | 1940.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산로 29-12 | 010- 9423-6250 |  |
| “ | 안 영 모 | 1956.10.24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길 36 | 010- 9390-3789 |  |
| 감 사 | 양 주 석 | 1946.12.15 | 경북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453-2 | 010- 4176-7993 |  |
| 감 사 | 이 재 길 | 1955.2.15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한천길 21. 조일리버빌 1302호 | 010- 3802-8356 |  |